

「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5. 10(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16. 6. 15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6. 6. 21(화)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장동기)

○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,951,122천원으로서, 이중 3건에 540,65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

▶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지출결정액 (결정일)	지출액	이월액	잔액	예비비지출 사유
합 계	3건	540,650	212,206	300,000	28,444	
안 전 건설과	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구입	124,000 (15.06.08)	95,556	-	28,444	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 (양수기) 구입
농업기술 센터	봄 가뭄대책 영농지원	116,650 (15.06.10)	116,650	-	-	봄 가뭄대책 영농지원 (고령지채소 가뭄대비 장비지원,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)
상하수도 사업소	마을(소규모) 상수도 가뭄해소	300,000 (15.11.25)	-	300,000	-	가뭄지속화에 따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식수난 예상 취수원 확보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,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.
- 또한,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, 재해·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음.
-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,951,122천원으로 3건에 540,650천원을 지출결정하여, 212,206천원을 지출하고 300,000천원을 이월하였으며, 28,44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- 지출내역별로 살펴보면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 구입 및 봄 가뭄대책 영농 지원 사업은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「마을(소규모)상수도 가뭄해소 사업」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납폐쇄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은 예비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예비비 집행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다 엄격히 집행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부.